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삭제)
- 공탁출연금 상·하한제 단서 규정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 제2항)

4.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 | |
| 연락처 | (02) 3480 - 1880 |